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인덱스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-파생형]

2. 변경시행일 : 2022년 5월 20일

3. 변경사유

① 투자신탁보수율 인하
② 선취판매수수료율 인하
③ 수익증권 명칭 변경 : 종류 B 수익증권 → 종류 C 수익증권
④ 기타 수익률 자료 등 업데이트
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의무, 용어정리 등)

4. 변경사항

가. 집합투자규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 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 내지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___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종류 **B** 수익증권 : 제한없음	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___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종류 **C** 수익증권 : 제한없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종류 **B** 수익증권 ② 내지 ④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종류 **C** 수익증권 ② 내지 ④ (현행과 같음)
제23조 (운용행위 감시의무 등)	① 내지 ③ (생략) ④ 신탁업자는 ___ 확인하여야 한다. 1. 내지 2. (생략) **<신 설>** **3**. 내지 **4**. (생략) **5**.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**이행명세 등**	①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신탁업자는 ___ 확인하여야 한다. 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 **3.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** **4.** 내지 **5.** (현행과 같음) **6.**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**이행명세**

	<신 설> ⑤ (생략)	**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** ⑤ (현행과 같음)
제30조 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**대차대조표**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내지 ④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___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**재무상태표**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내지 ④ (현행과 같음)
제32조 (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**대차대조표** 2. 내지 3. (생략) ② 내지 ③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**재무상태표** 2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 ②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
제39조 (보수)	① (생략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**대차대조표**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내지 3.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___ 금액으로 한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**연 1000분의 4.0**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**연 1000분의 4.0** 다. 신탁업자보수율	① (현행과 같음)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**재무상태표**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른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___ 금액으로 한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**연 1000분의 0.25**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**연 1000분의 2.0** 다. 신탁업자보수율

	: **연 1000분의 0.3**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**연 1000분의 0.14** 2. 종류 B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**연 1000분의 4.0** 나. 판매회사보수율 **1)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2010년 5월 2일까지 : 연 1000분의 12.0** **2) 2010년 5월 3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 : 연 1000분의 11.5** **3)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: 연 1000분의 11.0** **4)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 : 연 1000분의 10.5** **5) 2013년 5월 3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: 연 1000분의 10.0**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**연 1000분의 0.3**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**연 1000분의 0.14**	: **연 1000분의 0.1**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**연 1000분의 0.05** 2. 종류 **C**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**연 1000분의 0.25** 나. 판매회사보수율 **: 연 1000분의 4.0** **<삭 제>** **<삭 제>** **<삭 제>** **<삭 제>** **<삭 제>**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**연 1000분의 0.1**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**연 1000분의 0.05**
제40조 (판매수수료)	① (생략)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__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: 100분의 **0.9**	① (현행과 같음)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__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: 100분의 **0.3 이내**
제50조 (공시 및 보고서 등)	① 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공시(이하 "수시공시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**(괄호 추가)** 3. 내지 5. (생략) ③ 내지 ⑨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는 ___ 공시(이하 "수시공시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**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** 3. 내지 5. (현행과 같음) ③ 내지 ⑨ (현행과 같음)

부칙	**<신 설>**	**이 신탁계약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**

나. 투자설명서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변경 전</th><th>변경 후</th></tr>
<tr><td colspan="3"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td></tr>
<tr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td><td>(종류) 클래스 B</td><td>(종류) 클래스 C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/tr>
<tr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td><td><추 가></td><td>2022-05-20
신탁계약 변경
- 투자신탁보수율 및 선취판매수수료율 인하
- 수익증권 명칭 변경 : 종류 B 수익증권 → 종류 C 수익증권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운용행위 감시의무, 용어정리 등)</td></tr>
<tr><td>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</td><td>-</td><td>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나. 종류형 구조</td><td>종류 B</td><td>종류 C</td></tr>
<tr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(2) 보수 및 수수료 차이</td><td colspan="2">
<table>
<tr><th colspan="3"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</th></tr>
<tr><th>변경 전</th><th>변경 후</th></tr>
<tr><td>수수료</td><td>선취판매</td><td>A</td><td>0.90%</td><td>0.30% 이내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보수</td><td colspan="2">집합투자업자</td><td>0.4%</td><td>0.025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판매회사</td><td>A</td><td>0.4%</td><td>0.2%</td></tr>
<tr><td>C</td><td>1.0%</td><td>0.4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신탁업자</td><td>0.03%</td><td>0.01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사무관리회사</td><td>0.014%</td><td>0.005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나. 투자제한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
※ 브이아이 투게더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</td><td>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
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___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」 또는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「주</td><td>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
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___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td><td>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td></tr>
<tr><td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td><td>종류 B</td><td>종류 C</td></tr>
<tr><td>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
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</td><td>대차대조표</td><td>재무상태표</td></tr>
<tr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td><td>종류 B</td><td>종류 C</td></tr>
<tr>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td><td colspan="2">
<table>
<tr><th colspan="3"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</th></tr>
<tr><th>변경 전</th><th>변경 후</th></tr>
<tr><td>수수료</td><td>선취판매</td><td>A</td><td>0.90%</td><td>0.30% 이내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보수</td><td colspan="2">집합투자업자</td><td>0.4%</td><td>0.025%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판매회사</td><td>A</td><td>0.4%</td><td>0.2%</td></tr>
<tr><td>C</td><td>1.0%</td><td>0.4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신탁업자</td><td>0.03%</td><td>0.01%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사무관리회사</td><td>0.014%</td><td>0.005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td></tr>
<tr><td>1. 재무정보(반기)</td><td>-</td><td>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</td><td>종류 B</td><td>종류 C</td></tr>
<tr><td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td><td>-</td><td>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td></tr>
<tr><td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연결재무내용
라. 운용자산 규모</td><td>-</td><td>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 (2) 의무 및 책임 (가) 의무	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**<추 가>**	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**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** **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** **-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**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**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**

끝.